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98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한병도·진선미·장철민

이춘석 • 이해식 • 박용갑

이원택 · 정태호 · 위성곤

신정훈 · 윤건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 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2 | | |
|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 | | |
|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 | | |
|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 | | |
| 없다. <u>다만</u> , 다음 각 호의 사유 | <u><단서 삭제></u> | | |
|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 | | |
|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 | | |
|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 | | |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 | | |
|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 | | |
|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 | | |
|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